

제 2 장 상품무역

제 2.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A.T.A. 까르네 협약이란 1961년도 12월 6일에 채택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

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관세¹⁾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2.13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1) 인도의 관세는 1975년 인도 관세법상의 제1차 양허표에 규정된 기본 관세를 말하나, 이는 관세의 정의 또는 인도의 내국세나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이 이 장 제2조제3항 또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합치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 2.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4 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합의는 제15.5조(개정)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2-가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이나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부속서 2-가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2.5 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

제 2.6 조 비관세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정상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사실상 유발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마련,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2.7 조 관세가액

각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관세가액을 결정한다.

제 2.8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상품무역에 대한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일반 및 안보 예외

1. 이 장의 목적상,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와 제2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손상될 수도 있는 당사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법령상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10 조
국영기업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11 조
관세분류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목적상,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관세분류의 근거가 된다.

제 2.12 조
일시 수입

1. 각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일시 수입을 위하여 A.T.A. 까르네 협약에 기

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국 영역에서 유효한 A.T.A. 까르네를, 국내 세관서류에 갈음하여 A.T.A. 까르네 협약 제6조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수락한다.

- 가. 보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송신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신문사·라디오 또는 TV 방송기관의 업무수행자에 필요한 전문장비, 특정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화촬영장비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의 활동에 필요한 그 밖의 전문장비²⁾
- 나.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그리고
- 다. 외국 상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
 - 1) 전시용 외국 기계 또는 기기의 시범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
 - 2) 외국출품자의 임시전시대 설치를 위하여 전기장치를 포함한 건축자재 및 장식용 재료
 - 3) 음향·녹음장치·필름·환등슬라이드 및 이와 함께 사용되는 기기 등 전시되는 외국 상품을 위한 외형상 명백히 선전자재인 광고 및 시범용 재료, 그리고
 - 4) 국제적인 집회·회의 또는 회합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역기기·녹음기기 및 교육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필름을 포함하는 장치

2. 제1항에서 언급된 일시수입을 위한 편의는 다음의 조건 하에 부여된다.

- 가. 그 상품이 모든 점에서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증된 A.T.A. 까르네에 기재된 설명·수량·품질·가격 및 그 밖의 세부사항에 부합할 것
- 나. 그 상품에 대하여 재수출 증명이 가능할 것
- 다. 동일물품의 수량이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그리고
- 라. 그 상품을 수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이보다 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재수출될 것

제 2 절 무역 구제

2) 상품의 국내수송, 공업적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개발, 건물의 건축, 수리, 보수 또는 토목공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1 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 2.13 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2.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1)목부터 4)목까지 규정된 조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및 반덤핑 협정상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으로부터 도출된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한 한도 내에서 그 협정이 우선한다.
 - 1) 제2.14조(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 2) 제2.17조(최소부과원칙)
 - 3) 제2.18조(제로잉 금지), 그리고
 - 4) 제2.19조(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나.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반덤핑 조사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호에 따라 약속을 철회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철회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의 목록에 반덤핑 규율에 관한 조가 추가될 수 있다.

제 2.14 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접수한 후, 그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 2.15 조 정보이용

1. 원산지 상품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전 상품의 수출가격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에 나타난 가액에 근거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제3자 간의 제휴나 보상 약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반덤핑 협정 제2.3조에 따라 수출가격이 구성될 수 있다.

제 2.16 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모든 반덤핑 조사에서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제 2.17 조 최소부과원칙

반덤핑 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픽 마진 보다 낮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 2.18 조

제로잉 금지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따른 비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이 확정·산정 혹은 재심사될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 2.19 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1.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11.2조와 제11.3조에 따른 재심 결과, 수출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이후 1년 동안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관세 철회의 결과로 인하여 덤픽 또는 피해가 재발하였고, 수출 당사국으로부터의 덤픽 수입품에 의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 2.20 조 보조금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제16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 2-2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2.21 조 정 의

이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는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어느 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 이후 관세 철폐 또는 관세 인하 완료일부터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22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과도기간에 한하여,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³⁾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인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의 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명백히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경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단독으로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상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제 2.23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다음의 조건 및 제한이 제2.22조에 규정된 조사 또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은 다음에 관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 및 이유에 관한 조사절차 개시
 -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 그리고
 - 3)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결정
- 나. 가호에 언급된 통보를 함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증거, 관련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제안된 조치, 제안된 조치의 도입일 및 예상기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조사에서 생기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2.25조에 규정된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나호에 규정된 정보를 검토한다.
 - 1) 제2-2절의 준수
 - 2) 제안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 3) 대안적 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의 적합성
- 라.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마. 라호에 규정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바.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사. 어떠한 조치도

- 1)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또는
- 2) 예외적인 경우, 조사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 추가 2년까지 연장하여, 조치의 최초 부과일부터 총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아.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취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취하여진 기준의 모든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종료되어야 한다.

- 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는 즉시,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그리고
- 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 2년이 된다.

제 2.24 조 잠정조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제 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제2.23조라호 및 마호의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2.23조라호에 규정된 조사에서 제2.2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 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이 신속하게 반환되어야 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2.23조사호2)목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2.25 조 보 상

1.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의 적용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절한 수단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2.23조다호에 따른 협의 시 30 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2.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증가의 결과로서 취하여졌고 그러한 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권리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가. 조치가 발효 중인 최초 2년, 그리고

나. 제2.23조사호2)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 조치가 발효 중인 최초 3년

제 2.26 조 긴급조치 절차 운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규

정·결정 및 판정이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서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결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결정은 재심에 의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 대하여 공정하고 시의적절 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2.27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의무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2.28 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양자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보 교환·양자협의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사안에 대하여

- 1) 양 당사국의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2) 양자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문제를 다룬다.
- 3) 상호 이익 및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 4) 협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부속서 2-나에 열거된 분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된 협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또는 약정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하는 데 있어 모든 합법적인 지역 또는 불이행은 이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앞서 언급된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기술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그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상호협의 이후 부속서 2-나에 더 많은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 5)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 자국 기술규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 지침의 사용을 촉진한다. 그리고
- 6)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 및 표준에 대한 공급자의 선언을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사건의 발생과 위생 및 식물 위생에 관련된 규정 또는 기준의 변경 또는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관련 국제기준·지침 및 권고에 기초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동등성 인정과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인정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확인하고 협의한다. 이는 수출 당사국이 그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점과 관련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며,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수입 당사국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게 부여된다.
- 3) 상호 합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관하여 인적훈련과 공동 연구를 포함하여 기술협력 분야 및 형식을 검토한다. 그리고
- 4)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기능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제2항에 열거된 작업을 포함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한다. 공동작업반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동작업반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14.3조(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서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아니 된다.